

제 1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4년 06월 23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

담당자 : 유영민

문의전화 : 054-653-2301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이 *훈 1988-08-26	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도촌길	무단전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

2024년 06월 12일

효자면장

